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3.

여성가족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8월 29일, 김상욱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4년 8월 3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여성가족위원회 (2024. 11. 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 (2025. 3. 5.)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 3. 6.)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국회의원 김상욱)

정부는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가족교육, 상담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교육, 자녀

방문교육 등 가족 지원 서비스를 지원해왔으나 그 명칭으로 인해 특정 유형의 가족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인식되거나 지역별 서비스 편차·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음. 이에 가족 유형별로 이원화 되어 있는 가족지원서비스를 통합하여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로 확대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시범운영을 통해 통합센터 운영을 유도하고, 2021년 통합센터의 명칭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가족센터’로 변경하였으며 2024년 현재 전국 212개소의 가족센터가 운영되고 있음.

오늘날 1인가구의 증가, 한부모·다문화가족의 증가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가족 형태가 다변화됨에 따라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바, 가족센터의 기능 확대와 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등 운영 내실화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가족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주기적인 센터 평가와 환류 체계 구축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전국의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자녀에서 부모 및 조부모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족구성원의 욕구를 아우르는 수요자 중심 통합적 가족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정관에 가족센터의 사업수행실적 평가 추가

개정안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정관에 가족센터의 사업수행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제4항제11호 및 제12호).

현행	개정안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① ~ ③ (생략) ④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10. (생략) <u>11.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u> <u><신설></u> ⑤ ~ ⑩ (생략)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10. (현행과 같음) <u>11.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가족센터의 사업수행실적 평가</u> <u>12.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u> ⑤ ~ ⑩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제35조의3제1항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족센터의 사업수행실적을 3년마다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해당 평가결과를 가족센터의 감독 및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 제34조의2제7항제11호¹⁾에서는 진흥원의 사업으로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진흥원의 정관에 가족센터의 사업수행실적 평가를

1)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⑦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1.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규정함으로써 진흥원이 가족센터의 사업수행실적 평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그런데, 개정안 제35조의3은 가족센터 사업수행실적 평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면서 그 주체를 여성가족부장관으로 명시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평가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평가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평가 업무의 진흥원 위탁은 여성가족부장관의 재량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진흥원의 정관에 가족센터의 사업수행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체계상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봄.

개정안 제35조의3제2항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족센터의 사업수행실적 평가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현행법 제34조의2제7항제10호2)에 따라 진흥원은 가족 지원 사업 등과 관련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바,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가족센터 사업수행실적 평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이 체계상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 가족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개정안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합하여

2)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⑦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가족센터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 ~ ⑥ (생략) <u><신설></u>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 ~ ⑥ (현행과 같음) <u>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합하여 가족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u>

현행법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는 지역주민의 가족생활과 관련한 문제를 상담하고 관련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창구 역할을 하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3)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지역사회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국내 정착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4)에 따른 다문화

3)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 건강가정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할 것(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호에 따른 학력 취득과정이나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것

④ 센터의 조직·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가족지원센터가 있음.

한편, 여성가족부는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한곳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014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 및 건가-다가 통합센터 시범운영 사업 안내」(2014. 3. 1.)를 통해 건강가정센터와 다문화가족센터를 통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2021년 가족사업 안내」 개정(2021.10.13.)을 통해 센터 명칭을 가족센터로 변경하였음.

2024년 현재 전국 212개소의 가족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건강가정센터 13개소, 다문화가족센터 19개소는 통합하지 않고 각각 운영되고 있음.

-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아닌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 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사업
 - 7.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
 - 8.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⑤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⑦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위탁·지정 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가족센터 지역별 현황 >

(단위: 개소)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건강센터	13	-	3	-	1	-	-	-	-	5	-	-	2	1	-	-	1	-
다가센터	19	-	4	-	1	-	2	-	-	5	-	1	2	1	-	3	-	-
가족센터	212	26	10	9	9	5	3	5	1	26	18	11	13	13	22	20	19	2
계(244)	244	26	17	9	11	5	5	5	1	36	18	12	17	15	22	24	20	2

자료: 여성가족부

그런데, 가족센터의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추진됨에 따라 가족센터의 실질적인 통합 및 효율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2024년 10월 현재 212개소의 가족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시·군·구 단위의 통합가족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곳은 78개소에 불과한 상황임.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가족센터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인해 가족센터 현장에서 행정적 문제, 종사자 처우 문제, 타 기관과의 협력 시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다고 함.

이에 개정안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족센터의 위상 강화와 실질적인 통합 및 효율적인 운영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가족센터의 통합 설치·운영의 근거만 규정하고 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4항⁵⁾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7항⁶⁾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바,

단순히 가족센터의 공간적인 통합뿐만 아니라 운영상에 있어서 실질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가족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대강의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 가족센터 사업수행실적의 평가 및 평가 위탁 근거 등 마련

개정안은 가족센터의 사업수행실적 평가, 평가결과 공표, 평가결과 반영, 평가업무의 위탁, 위탁 비용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35조의3(사업수행실적 평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센터의 사업수행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④센터의 조직·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⑦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위탁·지정 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u>실적을 3년마다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해당 평가결과를 가족센터의 감독 및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u> <u>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평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u> <u>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 업무를 위탁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u> <u>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과 방법, 평가결과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u>

여성가족부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개별 사업을 매년 진흥원에 위탁하여 평가하였고, 2014년부터 가족센터로 통합함에 따라 2023년까지는 통합가족센터의 운영 및 사업을 3년마다 진흥원에 위탁하여 평가하고 있음.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가족센터는 여성가족부장관상을 수여하고, 가족센터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있으며, 미흡한 가족센터는 차년도에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음.⁷⁾

7) (평가목적) 가족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과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사업운영 내실화 및 서비스 질 향상 도모, (평가방법) 평가지표별 사전평정(서면) 및 현장평가, (예산) 400백만원

그런데, 가족센터의 실적 평가 및 위탁 기관인 진흥원에 대한 위탁 근거가 부재하여 가족센터 평가 등 업무의 안정적인 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가족센터의 사업수행실적 평가 및 그 위탁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족센터 평가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평가를 통하여 가족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소위원장 : 김한규)

김상욱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등의 내용으로, 사업수행실적 평가 대상을 가족센터뿐만 아니라 건강가정지원센터까지 포함하는 등 관련 규정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함.

(2023), (연혁) ① 2004~ 2010년: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각 개별 사업에 대해 매년 연도별 평가 실시, ② 2014년 : 3개년('11년~'13년) 평가 실시(서면, 현장), ③ 2017년 : 3개년('14년~'16년) 평가 실시(서면, 현장), ④ 2020년 : 3개년('17년~'19년) 평가 실시(서면, 현장) ⑤ 2023년 : 3개년('20년~'22년) 평가 실시(서면, 현장), (평가주기) 3년 주기, (평가결과 활용) 가족센터 우수사례 공유, 평가 결과 우수한 가족센터에 대해서는 장관상을 수여, 미흡한 가족센터는 차년도에 컨설팅 실시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의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 [붙임] 1.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3. .

제 안 자 : 여성가족위원장

수정이유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신설한 “가족센터의 사업수행실적 평가”를 삭제하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사업에 “센터 및 가족센터의 사업수행실적 평가 지원”을 추가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센터의 사업수행실적 평가기관의 설치·운영 및 업무 위탁 근거 등을 정비함으로써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며, 체계상 부합하도록 함.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실질적인 통합·운영을 위하여 가족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규정을 추가하고, 동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 가족센터를 추가로 명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수정주요내용

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신설한 “가족센터의 사업수행실적 평가”를 삭제하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사업에 “센터 및 가족센터의 사업수행실적 평가 지원”을

추가함(안 제34조의2제4항제11호 삭제 및 같은 조 제7항제9호의 2 신설).

나. 가족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5조제8항 신설).

다. 여성가족부장관의 사업수행실적 평가 대상에 센터를 추가하고, 가족센터의 사업수행실적 평가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평가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35조의3제1항 및 제2항·제3항 삭제).

라. 동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 가족센터를 추가로 명시함(안 제34조의2제7항제7호, 제35조의2, 부칙 제2조 신설).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4조의2제4항제1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제11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7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센터”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를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9호의2의”로 한다.

9의2.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센터 및 가족센터의 사업수행실적 평가 지원

안 제35조제7항 중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7항에 따른 가족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2 중 “센터가 아닌 자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센터 또는 가족센터가 아니면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센터”로 한다.

안 제35조의3제1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센터의”를 “여성가족부장관은 센터 및 가족센터의”로, “평가결과를 가족센터의”를 “평가결과를 센터와 가족센터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2항으로 한다.

안 부칙 본문을 삭제하고, 제1조 및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8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센터”로 한다.

② 긴급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7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센터”로 한다.

③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6제2항제8호 및 제39조의17제1항제4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각각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센터”로 한다.

④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5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센터”로 한다.

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7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센터”로 한다.

⑥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제1항제3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센터”로 한다.

⑦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5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센터”로 한다.

⑧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24호 및 제57조제3항제16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각각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센터”로 한다.

⑨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센터”로 한다.

⑩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4제2항제15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센터”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① ~ ③ (생략)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 ----- ----- -----.	④ ----- ----- ----- -----.
1. ~ 10. (생략)	1. ~ 10. (현행과 같음)	1. ~ 10. (개정안과 같음)
11.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11.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가족센터의 사업수행실적 평가	<삭제>
<신설>	12.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11. (개정안 제12호와 같음)
⑤ · ⑥ (생략)	⑤ ~ ⑩ (현행과 같음)	⑤ · ⑥ (개정안과 같음)
⑦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⑦ ----- ----- --.
1. 가족상담 및 가		1. ~ 6. (현행과 같

센터의 설치) ① ~ ⑥ (생 략) <u><신 설></u>	센터의 설치)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u>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는 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 법」 제12조에 따 른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등을 통합하 여 가족센터를 설 치·운영할 수 있 다.</u> <u><신 설></u>	센터의 설치) ① ~ ⑥ (개정안과 같음) ⑦----- ----- ----- ---<u>다문화가족지원 센터</u>를----- ----- -----. ⑧ <u>제7항에 따른 가족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u>
제35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u>센터가 아닌 자는 건강가정지원 센터 또는 이와 유 사한 명칭을 사용 하지 못한다.</u> <u><신 설></u>	제35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현행과 같음) <u>제35조의3(사업수행실</u>	제35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u>센터 또는 가 족센터가 아니면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센터</u>----- ----- ----- -. 제35조의3(사업수행실

적 평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센터의 사업수행실적을 3년마다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해당 평가결과를 가족센터의 감독 및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평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 업무를 위탁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적 평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센터 및 가족센터의-----

평가결과를 센터와 가족센터의-----

<삭 제>

<삭 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과 방
법, 평가결과의 공
표 등에 필요한 사
항은 여성가족부령
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
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한다.

② (개정안 제4항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
은 공포 후 6개월
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
정) ① 가정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 4 조 제 2 항 제 8 호
중 “건강가정지원
센터”를 “건강가정
지원센터 및 가족
센터”로 한다.

② 긴급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제7호
중 “건강가정지원
센터”를 “건강가정
지원센터 및 가족
센터”로 한다.

③ 노인복지법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6제2항 제8
호 및 제39조의17
제1항제4호 중 “건
강가정지원센터”를
각각 “건강가정지
원센터 및 가족센
터”로 한다.

④ 발달장애인 권
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5조 제2항 제15호
중 “건강가정지원
센터”를 “건강가정
지원센터 및 가족
센터”로 한다.

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
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 제17호
중 “건강가정지원
센터”를 “건강가정
지원센터 및 가족
센터”로 한다.

⑥ 아동복지법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의3제1항 제3
호 중 “건강가정지
원센터”를 “건강가
정지원센터 및 가
족센터”로 한다.

⑦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제5호
중 “건강가정지원
센터”를 “건강가정
지원센터 및 가족
센터”로 한다.

⑧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24호
및 제57조제3항제1
6호 중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각각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센터”로 한
다.

⑨ 장애아동 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 한
다.

제30조제3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
를 “건강가정지원
센터 및 가족센터”
로 한다.

⑩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59조의4제2항제1
5호 중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건강

		<u>가정지원센터</u> 및 <u>가족센터</u> ”로 한다.
--	--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7항제7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제9호까지”를 “제9호까지 및 제9호의2”로 한다.

9의2.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센터의 사업
수행실적 평가 지원

제35조의 제목을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한다.

제35조의2를 제35조의3으로 하고,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가족센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3(중전의 제35조의2) 중 “센터가 아닌 자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센터 또는 가족센터가 아니면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센터”로 한다.

제4장에 제3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4(사업수행실적 평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센터 및 가족센터의 사업수행실적을 3년마다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해당 평가결과를 센터와 가족센터의 감독 및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과 방법, 평가결과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8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로 한다.

② 긴급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7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로 한다.

③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6제2항제8호 및 제39조의17제1항제4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각각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로 한다.

④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5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로 한다.

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7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로 한다.

⑥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제1항제3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로 한다.

⑦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5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로 한다.

⑧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24호 및 제57조제3항제16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각각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로 한다.

⑨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

의2에 따른 가족센터”로 한다.

⑩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4제2항제15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① ~ ⑥ (생략)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⑦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35조의 <u>건강가정지원센터</u>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사업 관리 및 종사자 교육훈련	7. ----- <u>건강가정지원센터</u> , <u>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u> ----- ----- ----- ----- ----- -----
8. · 9. (생략)	8. · 9. (현행과 같음)
<u><신설></u>	9의2.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u>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센터의 사업수행실적 평가 지원</u>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 등으로 부터 위탁받은 사업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 <u>9호의2</u> ----- ----- -----
11. (생략)	11. (현행과 같음)
⑧ ~ ⑩ (생략)	⑧ ~ ⑩ (현행과 같음)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 ~ ⑥ (생략)

<신설>

<신설>

제35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센터가 아닌 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 ① ~

⑥ (현행과 같음)

제35조의2(가족센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3(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센터 또는 가족센터가 아니면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센터-----.

제35조의4(사업수행실적 평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센터 및 가족센터의 사업수행실적을 3년마다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해당 평가결과를 센터와 가족센터의 감독 및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과 방법, 평가결과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

로 정한다.